

부산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나57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수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최영섭

변론 종결 2020. 4. 22.

판결 선고 2020. 6. 10.

제 1 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8. 17. 선고 2011가단7484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D(이하 'B', 'D'라고만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동생 D가 원고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려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D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6회에 걸쳐 합계 50,666,000원을 이체 받았는바, 피고는 D와 공동불법행위자로 서 피고의 모친 B가 D, 피고를 대신하여 반환할 것을 약속한 43,600,000원을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와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1. 9.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원고가 든 참조판결(대법원 2010. 11. 11. 선고2010다41263, 41270 판결)은 수취인이 이체된 돈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사안으로 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0,6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체된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자신의 모친인 B의 생활비를 보태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B에게 교부하였고, 2006년 이후 이 사건 계좌에 피고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이 없다

② 이 사건 계좌의 입출금거래는 주로 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바, 2007. 6.경부터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피고가 부산까지 내려와 그와 같은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입금 직후 여러 차례에 걸쳐 그돈이 바로 출금되었고, 특히 원고가 2007. 12. 20. 이 사건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직후 이 사건 계좌에서 I과 D 명의 계좌로 4회에 걸쳐 각 6,000,000원씩 이체되었는바, 원고가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는 D가 위 돈을 출금·이체한 것이 아닌지강한 의심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상민, 판사 신민석, 판사 양우창